

# 준 비 서 면

사 건 2012추15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청구의 소  
원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피고참가인 서울특별시교육감

2012. 12.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김수정, 류민희, 서선영, 정정훈, 조혜인

## 대법원 특별2부 귀중



# 【목 차】

1. 본 준비서면의 구성.....	1
가. 제소요건에 관하여	
나.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2. 이 사건 심판대상에 관하여 .....	3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원고 주장의 부당성	
1) 문제의 소재	
2) 제172조 제4항에 따른 직접제소의 심판대상	
3) 제172조 제7항에 따른 직접제소의 심판대상	
다. 소결론 : 이 사건 소의 심판대상	
3. 이 사건 조례안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9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원고 주장의 부당성	
다. 소결론	
4. 이 사건 조례안이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10
가. 참가인의 조례안 제안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10
1) 원고 주장의 요지	
2) 원고 주장의 부당성	
가) 조례안 제안권 침해의 판단기준	

나) 형식면에서, 이 사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민들이 참가인에게 제정을 청구하고 참가인이 피고에게 부의한 것입니다.

다) 실질면에서, 문제된 집행기관 설치조항들은 조직편성에 관한 참가인의 의사를 철저히 반영하여 만들어진 조항들입니다.

3) 소결

나. 참가인의 인사권 및 피고의 전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15

1) 원고 주장의 요지

2) 원고 주장의 부당성

가) 총설

나) 조항별 검토

3) 소결

다. 참가인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25

1) 원고 주장의 요지

2) 원고 주장의 부당성

3) 소결

라. 소결론 ..... 26

5. 결론 ..... 27

<첨부> 집행기관 설치조항 비교표 ..... 30

# 준 비 서 면

사 건 2012추15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청구의 소  
원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피고참가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1. 본 준비서면의 구성

### 가. 제소요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피고참가인에게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2011. 12. 20. ~ 2012. 1. 9.)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재의요구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이후 행해진 이 사건 제소는 지방자치법 제 172조가 정한 직접제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참가인의 주장을 원용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나. 원고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그러나 설사 원고의 재의요구지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기타 이 사건 소제기에 필요한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여 모두 이유 없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제기된 이 사건 소의 심판대상은 '감독청이 이유를 붙여 원고에게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한 사항'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위법성 사유 중 일부는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설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의결사항의 법령 위반의 점에 관해 무엇이든 제한 없이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라도,

① 이 사건 조례안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례안이 의결된 후에 진행된 경과 관련 주장에 불과하여 주장의 당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고,

② 이 사건 조례안의 실제적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 역시 지방자치법령 및 교육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모두 이유 없습니다.

이하 본 서면에서는 이 사건 심판대상, 이 사건 조례안의 절차적 위법성, 이 사건 조례안의 실제적 위법성에 관한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차례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이 사건 심판대상에 관하여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의 직접 제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불응에 대한 감독권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권의 성질을 가지는 점,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에 대한 소송은 일종의 추상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지는 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지시에 불응하거나 재의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는 재의요구 당시의 이의사항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독청인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의한 소송에서 의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나. 원고 주장의 부당성

#### 1) 문제의 소재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감독청'이라고 합니다)의 감독권에 관한 조항으로, 동조 제4항 및 제7항은 감독청에게 직접제소

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4항은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동조 제1항 전단)를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가 있었던 경우의 직접제소권,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조례안이 공포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직접제소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감독청의 직접제소권은 제4항, 제7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권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성질에 비추어 제172조 제4항에 따른 직접제소의 심판대상을 먼저 검토한 후, 이 사건과 같이 제172조 제7항에 따른 직접제소의 심판대상 역시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2) 제172조 제4항에 따른 직접제소의 심판대상

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권 행사(적법성 통제)'라는 직접제소제도의 취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해당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172조 제4항의 직접제소권은 동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소권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격의 권한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감독청의 직접제소권의 범위는 애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는 제소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72조 제3항에 따라 제소를 하는 경우, 그 심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국한됩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따라서 감독청이 제172조 제4항에 따라 직접제소를 하는 경우의 심판대상 역시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하게 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감독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했던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사후에 직접제소를 하여 소송에서 비로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감독청의 직접제소권의 범위가 애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어진 제소권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나) 대법원 역시 제172조 제4항에 따라 소제기된 사건에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 3) 제172조 제7항에 따른 직접제소의 심판대상

가) 이 사건 제소는 감독청이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직접제소를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심판대상을 앞서 본 동조 제4항에 따른 직접제소의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권'이라는 직접제소제도의 일반적인 취지에 비추어보면 제7항의 직접제소권 역시 보충적인 성격의 권한으로서 애초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질 수 있었던 제소권의 범위(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하였더라면 제소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7항의 직접제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지시 불응'에 대한 직접

적인 통제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위 조항은 감독청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제로 재의요구의 지시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만 직접 제소로써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의요구지시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직접제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통제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부당합니다.

다) 직접제소제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권'의 성질 또한 갖습니다. 만약 제7항의 직접제소권의 범위를 제4항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에 따라 감독청의 직접제소권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지방의회가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동 여하에 종속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제4항에 따른 직접제소와 마찬가지로 제7항의 경우에도 감독청이 애초에 재의요구를 지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소송에서 비로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제7항의 심판대상 역시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 당시의 이의사항' 즉, '감독청이 이유를 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마) 그 외 원고는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에 대

한 소송은 일종의 추상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일종의 추상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위의 경우뿐만 아니라 제172조에 따른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전체가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지시에 불응하거나 재의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는 재의요구 당시의 이의사항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172조 제7항의 심판대상은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 당시의 이의사항'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 소결론 : 이 사건 소의 심판대상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 중 ①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②참가인의 인사권이나 참가인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재의요구지시 당시 법령에 위반되어 이의해야할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갑제3호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재의요구 요청 공문 참조).

그러나 그 외의 주장은 원고가 재의요구지시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지 않았다가 이 소송에서 비로소 내세운 주장인바, 이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준비서면 주장 중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이 사건 심판대상

원고 준비서면의 위법성 주장 중		심판대상 여부
이 사건 조례안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		×
이 사건 조례안의 실체적 위법성 주장	가. 참가인의 조례안 제안권 침해 주장	×
	나.중 참가인의 인사권 침해 주장	○
	나.중 피고의 견제권 침해 주장	×
	다. 참가인의 정책결정권 침해 주장	○

### 3. 이 사건 조례안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례안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재의 요구는 철회할 수 없고, 설령 철회가 가능하다더라도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되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이를 공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 나. 원고 주장의 부당성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른 소는 감독청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그

의결사항에 관하여 다투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내용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지방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바에 관하여는 그 위법성을 다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조례안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조례안 의결 이후에 참가인이 한 재의요구 철회와 공포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의요구의 철회와 공포는 피고가 의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의결 절차에서의 하자 또한 아닙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의 재의 요구 철회와 공포로 인해 피고의 조례안 의결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조례안 의결 사항과 무관한 것일 뿐더러 조례안 의결 절차에 관한 것도 아닌바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 4. 이 사건 조례안이 실제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가. 참가인의 조례안 제안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 소속의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참가인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집행기관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침해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령 및 교육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 2) 원고 주장의 부당성

### 가) 조례안 제안권 침해의 판단기준

(1)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해 설치된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은 각각 심의·자문기구 및 자문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참가인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1)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이상의 기관들은 모두 집행기관에 속하므로 이들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권은 참가인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추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피고가 참가인의 이러한 조례안 제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므로 형식면에서 이 사건 조례안을 누가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근거 조항이라는 주장은 철회합니다

발의하고 제안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조례안 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 보다 본질적으로는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갖는 조직편성권에 기초해있는 것이므로, 실질면에서 이 사건 조례안으로 인해 집행기관 전반에 대하여 갖는 참가인의 조직편성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두 측면에서 이 사건 조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형식면에서, 이 사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민들이 참가인에게 제정을 청구하고 참가인이 피고에게 부의한 것입니다.

(1)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홍세화를 대표청구인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참고인에게 제정 청구된 것입니다(을제3호증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1-108호 참조). 참가인은 위 제정청구를 수리한 후, 2011. 9. 30. 동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제정 청구된 조례안(이하 '주민발의안')을 피고에게 부의하였습니다(을제4호증의1 내지 2 서울특별시의회 처리의안 화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참조).

(2) 이와 같이 형식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민들이 발의하고 참가인이 부의한 것이지 피고가 발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이 참가인의 조례안 제안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 실질면에서, 문제된 집행기관 설치조항들은 조직편성에 관한 참가인  
의 의사를 철저하게 반영하여 만들어진 조항들입니다.

(1) 참가인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당선되었습니다(을제5호중 2010. 12. 30. 연합뉴스기사 참조). 참가  
인은 정책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자적인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  
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제1항 7호2)에 따라 참가인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교  
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발의안과 구별되는 독자  
적인 학생인권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참가인은 2011. 9. 8. '서울학생인권  
조례 제정 및 학교생활교육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위 자문위원회  
가 작성한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이하 '자문위 초안')을 발표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인권조례안을 마련한 후 2011. 9월 내 입법에  
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을제6호중의1 내지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9. 7. 보도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참조). 그러나 그 이후 참고인은 주민  
발의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을 존중하여 독자적인 학생인권조례안의 발의를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2) 그런데 2011. 9. 당시 발표되었던 위 자문위 초안은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에서 학생인권위원회(제31조~제33조), 학생자치의회(제35  
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7.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조), 학생인권옹호관(제38조~제40조) 및 학생인권지원센터(제41조) 등의 집행기관을 설치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의 집행기관 설치조항과 자문위 초안의 각 대응되는 조항 및 주민발의안의 각 대응되는 조항들의 내용을 각각 비교해보면, 피고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위 자문위 초안의 집행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들을 대부분 반영하는 내용으로 주민발의안을 수정하여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 조례안 중 ① 학생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들(조례안 제33조 내지 제35조)은 주민발의안의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대신 자문위 초안의 '학생인권위원회' 규정들(동 초안 제31조 내지 제33조)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② 학생참여단 설치 조항(조례안 제37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관한 제4항 역시 자문위 초안 제35조 제2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조항(조례안 제38조, 제40조) 또한 그 핵심적인 사항인 옹호관의 명수, 지위, 신분보장(해임사유) 등에 대해 자문위 초안의 규정(동 초안 제38조, 제49조)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④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조항(조례안 제42조) 역시 자문위 초안의 '학생인권지원센터' 규정(동 초안 제41조)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 조문들의 구체적인 내용 비교에 대해서는 첨부된 [표1] 내지 [표4] 참조)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된 조항들은 모두 자문위 초안을 반영하는 형태로 수정 의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조례안 중 집행

행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들은 사실상 모두 참가인의 조직편성에 관한 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들인바,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해 참가인의 집행기관 전반에 대한 조직편성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3)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조례안은 형식면에서 서울특별시 주민들이 참가인에게 제정을 청구하고 참가인이 피신청인에게 부의하는 절차를 통해 발의된 것이며, 실질면에서 살펴보아도 문제되고 있는 집행기구 설치조항 모두가 참가인의 조직편성의사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제안된 조항들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결하였을 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제안된 과정은 간과한 채 피고가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였다는 점만을 문제삼아 피고가 참가인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례안 의결권의 행사는 피고의 고유권한이자 본연의 업무(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수궁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이 참가인의 조례안 제안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이 지방자치법령 및 교육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나. 참가인의 인사권 및 피고의 견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 중 ① 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조례안 제34조)은 참가인의 인사권을 외부인 또는 학생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거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② 학생참여단 선발에 관한 규정(조례안 제37조) 또한 참가인의 인사권을 외부인과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이어서 참가인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해촉에 관한 규정(조례안 제38조)은 참가인의 인사권을 학생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인사권에 관한 피고의 견제권을 제한·박탈한 것이기도 하여 법령에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 2) 원고 주장의 부당성

### 가) 총설

(1) 집행기관의 인사권은 무한정, 무정형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인사 대상의 특성에 따라 조례나 내부규칙 등으로 임명·해임의 일정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며 또 필요합니다. 원고가 문제 삼는 위 조항들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각 기구의 특성에 맞추어 그 임명·해임의 요건 및

절차를 적정하게 규정한 것일 뿐 참가인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한편 대법원은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의 원리에 비추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는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관련 법리'로 인용한 93추175판결(원고 준비서면 30면) 또한 이러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관련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판례의 법리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참가인(집행기관)과 피고(지방의회)와의 관계가 아닌 참가인과 '외부인' 또는 참가인과 '참가인에 소속된 기관'인 학생인권위원회와의 관계에 일방적으로 준용하면서 이 사건 조례안은 외부인 또는 학생인권위원회가 참가인의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주장으로서 부당합니다.

(3) 아래에서는 항을 바꾸어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각 조항별로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 나) 조항별 검토

(1) 학생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조례안 제34조)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가) 2명 이상의 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외부 추천을 받은 자와 공개모집에 신청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것(제3항)이 참가인의 인사권을 외부인과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학생인권위원회는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들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기구이고, 그 위원에게는 인권

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높은 감수성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 및 인권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34조 제3항이 위원회 위원 중 일정 명수 이상을 공개모집에 신청한 자와 각계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이러한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참가인의 인사권을 외부인과 공동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학생인권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한 것(제1항)이 참가인의 인사권을 학생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생인권문제 전반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라는 성격상 학생인권위원회는 그 운영과 업무에 관한 독립성과 자치성이 일정 정도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호선 규정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자치권을 보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학생인권위원회가 참가인의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것(제3항 제7호)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3항 본문의 문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 교육감이 위

촉한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조항의 각 호는 참가인에게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위 조항은 참가인이 각 호의 추천받은 자들을 심의하여 그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는 것을 예정한 것이지, 각 호의 추천을 받은 자를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위 조항 중 제1, 3, 6호 위원의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위원은 심사 및 심의를 통해 선발되는 것이고, 비영리단체(제1호) 또는 학부모단체(제6호)의 추천은 이러한 심의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선행조건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공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을제7호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및 추천 공고 참조).

이처럼 제3항에서 학생인권위원 위촉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여전히 참가인이 행사하는 것이고, 이는 동 조항 제7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가인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심의를 거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위원회의 추천에 기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두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라)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해촉하도록 한 것(제7항 제3호)은 참가인의 인사권을 학생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은 일반적인 해임사유의 하나입니다. 다만, 위 조

항은 위원이 이러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는 점을 '위원회가 인정할 것'을 해촉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심의·자문기관으로서 학생인권위원회의 자치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심의·자문기관 구성원의 해촉 사유로 위원의 품위손상 등을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인정(또는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다른 조례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규정례입니다3). 이러한 해촉 규정을 들어 학생인권위원회가 참가인의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2) 학생참여단 선발에 관한 규정(조례안 제37조 제3항)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3) 유사례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4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위원회 설치) 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②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장기불출석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촉하여야 한다.



원고는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학생참여단을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이 참가인의 인사권을 외부인과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학생참여단은 정책 수립에 학생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서 그 의견이 참가인을 기속하지 않는 자문기구에 해당하며 100명 이내라는 큰 규모로 구성됩니다. '공개모집 후 추첨'을 학생참여단의 원칙적인 선발 방식으로 하고, 참가인의 위촉을 보조적인 선발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대규모의 의견수렴기구라는 특성에 맞는 적절한 규정이며, 이를 두고 참가인의 인사권을 외부인과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3)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해촉에 관한 규정(조례안 제38조 제2항, 제4항)

-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가)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해촉에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2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촉하도록 한 것은 참가인의 인사권을 학생인권 위원회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것이 요구되는 점,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에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조례 제39조 제9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학생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자문기구인 학생인권위원회에게 학생인권 옹호관 임명·해촉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학생 인권위원회는 참가인에 소속된 기관이므로 학생인권위원회의 위 동의 절차는 집행기관 구성원의 인선에 관한 집행기관 내부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참가인의 인사권은 참가인 소속 기관들 사이의 업무 분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므로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 절차는 참가인 인사권 행사 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일 뿐, 이를 두고 참가인의 인사권이 '공동'으로 행사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청 내에 학생인권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그 직위를 상임의 계약직 공무원(동조 제3항)으로 하여 외부의 인권전문가가 일정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신분 또한 보장됩니다(동조 제4항 본문 전단). 위 조항이 학생인권옹호관의 해촉 사유를 2가지에 한정된 것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위 규정이 참가인의 인사권에 대한 피고의 견제권 또한 제한·박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조항은 지방의회의 동의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 절차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구성원의 인선에 관한 집행기관 내부의 업무 분담 절차를 이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관련법리로 든 2000추36판결(원고 준비서면 32면)에서 판시하고 있는 기관 외·기관 대립적인 의미의 견제권과는 무관합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방의회의 견제권이 위 규정에 의해 제한·박탈되는 일 또한 불가능합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위 조항에 지방의회의 동의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자체가 피고의 견제권을 제한·박탈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그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위 2000추36판결의 취지는 집행기관 인사에 관한 지방의회의 동의권 규정이 일정한 경우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 집행기관의 모든 인사에 대한 동의권이 지방의회에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조례의 각 규정들이 참가인의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피고의 견제권을 제한·박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

다. 참가인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학생인권위원회가 단순히 참가인의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결정을 심의·자문하는 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 결정에 사전 또는 사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례안은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반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참가인의 고유권한(정책결정권)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2) 원고 주장의 부당성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 학생인권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 심의·평가, 자문 및 권고를 하는 기능의 전문위원회입니다(제33조 제1항, 제2항).

학생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영향을 사전 평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 또는 중단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 위 권고를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한 규정(제43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시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평가시 학생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제45조),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학생인권옹

호관이 집행하도록 한 규정(제39조 제9호) 등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각 규정들은 모두 위와 같이 학생인권위원회를 둔 취지와 그 심의 기능에 충실한 조항들입니다. 위 규정들에 따르더라도 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인권영향평가 등 정책결정에 관한 최종 권한은 참가인에게 있음이 각 조항의 문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참가인의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인권위원회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애초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관대립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참가인에 소속된 심의·자문기구로서 참가인이 통할하여 관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관 내 업무분장의 문제일 뿐 기관대립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반한다고 평가하는 원고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 3) 소결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 관련 정책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이고 이러한 업무 또한 원고에게 소속된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이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반하여 참가인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조례안이 실제적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

## 5. 결론

### 가. 제소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조례안이 피고참가인에게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재의요구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소는 부적법합니다.

### 나. 심판대상에 관하여

이 사건 제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소제기된 이 사건 소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할 당시 법령위반사유로 이의를 지시했던 사항'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유를 이 사건 소에서 비로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다. 이 사건 조례안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은 참가인의 재의요구 철회와 공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안이 의결된 이후에 일어난 사정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조례안 의결의 적법성에 관한 이 사건의 소의 심판대상과 무관하여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입니다.

라. 이 사건 조례안의 실제적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민들이 발의하고 참가인이 부의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의결로써 참가인의 조례안 제안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참가인의 인사권, 피고의 견제권 및 참가인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또한 지방자치법령 및 교육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모두 이유 없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3. 30.자 원고 준비서면상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

## 입 증 방 법

- |            |                                       |
|------------|---------------------------------------|
| 1. 을제3호증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1-108호                  |
| 2. 을제4호증의1 | 서울특별시의회 처리의안 화면                       |
| 3. 을제4호증의2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
| 4. 을제5호증   | 2010. 12. 30. 연합뉴스기사                  |
| 5. 을제6호증의1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9. 7. 보도자료             |
| 6. 을제6호증의2 |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
| 7. 을제7호증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공개<br>모집 및 추천 공고 |

#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2012. 12.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수정



변호사 정정훈



## 대법원 특별2부 귀중



<첨부>

### 집행기관 설치조항 비교표

(※이 사건 조례안의 조항 순서에 따라 정렬함)

[표 1] 학생인권위원회

이 사건 조례안	자문위 초안	주민발의안
<p>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li> <li>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li> <li>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li> </ol>	<p>제31조(학생인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위원회(이하 “학생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li> <li>2. 교육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li> <li>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li> </ol>	<p>제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li> <li>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li> <li>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li> </ol>

이 사건 조례안	자문위 초안	주민발의안
<p>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p> <p>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p> <p>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p> <p>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 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p> <p>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p> <p>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p> <p>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p> <p>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p> <p>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p> <p>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활동에 대한 교육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p> <p>5. 교육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p> <p>6. 교육인권에 대한 지역 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p> <p>7. 교육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p> <p>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심의</p> <p>9. 교육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p> <p>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p> <p>③ 학생인권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34조(위원회의 구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p>	<p>제32조(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p>	<p>제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p>

이 사건 조례안	자문위 초안	주민발의안
<p>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li> <li>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li> <li>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li> <li>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li> <li>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li> </ol>	<p>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인 이상</li> <li>2. 학생의회에서 학생인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인 이상</li> <li>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li> <li>4.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인 이상</li> <li>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li> </ol>	<p>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p> <p>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li> <li>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li> <li>3.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li> </ol>

이 사건 조례안	자문위 초안	주민발의안
<p>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p> <p>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p> <p>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p> <p>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p> <p>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p>	<p>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p> <p>7.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이상</p> <p>②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p>
<p>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p> <p>1. 정기회 : 연 4회 이상</p> <p>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p>	<p>제33조(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p> <p>②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p> <p>1. 정기회 : 연 4 회 이상</p> <p>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p>	

이 사건 조례안	자문위 초안	주민발의안
<p>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p> <p>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p> <p>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p>	<p>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p> <p>③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④ 학생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p> <p>⑤ 학생인권위원회의 간사는 제31조제2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인이 담당한다.</p> <p>⑥ 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⑦ 학생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p>	<p>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6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p>

이 사건 조례안	자문위 초안	주민발의안
<p>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li> <li>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li> <li>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li> <li>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li> <li>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문화 방안</li> <li>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li> </ol>	<p>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2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li> <li>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li> <li>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li> <li>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li> <li>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문화 방안</li> <li>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li> </ol>	<p>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서울특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이 사건 조례안	자문위 초안	주민발의안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표 2] 학생참여단

이 사건 조례안	자문위 초안	주민발의안
<b>제37조(학생참여단)</b>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b>제35조(학생자치의회)</b> ① 교육감은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참여와 의견을 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 자치의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학생자치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학생의회는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b>제37조(학생참여위원회)</b>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이 사건 조례안	자문위 초안	주민발의안
<p>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p> <p>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p> <p>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p> <p>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p> <p>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p> <p>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p> <p>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p> <p>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 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p>	<p>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의 제시</p> <p>2.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한 의견의 제시</p> <p>3.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p> <p>4.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p> <p>5.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p> <p>6. 서울특별시 교육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p> <p>7. 학생인권옹호관의 인권구제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p> <p>8. 기타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③ 교육감은 학생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의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④ 학생의회의 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출할 수 있다.</p> <p>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p> <p>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p> <p>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p> <p>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표 3] 학생인권옹호관

이 사건 조례안	자문위 초안	주민발의안
<p>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p> <p>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p> <p>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p> <p>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p>	<p>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정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p> <p>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p> <p>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그 보수 및 처우는 &lt;별표&gt;와 같이 한다.</p> <p>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p>	<p>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p> <p>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p> <p>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 지역에서 활동한다.</p>

이 사건 조례안	자문위 초안	주민발의안
<p>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p> <p>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 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p> <p>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p> <p>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제1호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p> <p>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 인권 혹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p> <p>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p> <p>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p> <p>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p>
<p>제40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9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장에 의한 사건 처리 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표 4] 학생인권교육센터

이 사건 조례안	자문위 초안	주민발의안
<p>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p> <p>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p> <p>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li> <li>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li> <li>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li> <li>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li> <li>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li> <li>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p>	<p>제41조(학생인권지원센터)</p> <p>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p> <p>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li> <li>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li> <li>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li> <li>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li> <li>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li> <li>6.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학생인권센터에 계약직공무원을 두며 그 정원 및 그 처우 등은 &lt;별표&gt;와 같이 한다.</p>	<p>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p> <p>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p>

이 사건 조례안	자문위 초안	주민발의안
<p>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주민발의 청구사실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규정에 의거 주민발의 청구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 년 5 월 25 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

주민 발의 청구인 대표자	성 명	홍 세 화
	생년월일	1947년 12월 10일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2-37번지 4층-401호
청구취지 및 이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연서 주민수	85,362명	
청 구 일 자	2011년 3월 20일	
첨 부 서 류	청구 조례안	

# 주민발의 청구인서명부 열람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규정에 의거 주민발의 청구인서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5 월 25 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

열람 기간 (부터 ~ 까지)	2011. 5. 26 ~ 6. 7 (교육청 휴무일 및 공휴일 제외)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 : 2층 204호 · 지역교육청 : 민원봉사실 등
열람권자	서울 시민
열람 서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청구」 청구인 서명부
이의 신청	열람 기간 중 신청 ※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증명자료 포함)를 제출



## 처리/계류 의안

Search

HOME > 처리/계류 의안 > 처리의안 > 목록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의안번호	의안종류	의안구분	원안
08-00506	조례안	의안구분	원안
제안일	제안자	제안일	제안자
2011-09-30	교육감	2011-10-04	심사보고일
소관위원회	소관위원회	2011-12-16	상정일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2011-12-16	심사일
		수정기결	처리결과
심사결과	심사보고일	2011-12-19	상정일
		2011-12-19	의결일
		가결	처리결과

결과요지 :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1-26  
 공포일 : 공포번호 제5247호  
 첨부파일 : [원안-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제안안-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의안 번호	506
----------	-----

제출년월일 : 2011년 9월 3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정이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2. 제정근거

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나.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 3. 주민발의 청구 내용

- 청구명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청구」
- 청구인 대표 : 홍세화
- 청구 취지 :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4. 주요골자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체벌금지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 두발, 복장 완전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음제 4 의정 2



-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 집회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6.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경쟁 교육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학생의 인권

###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취학연령의 이주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3.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
4.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6.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7.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학교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 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2.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 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청구 또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또는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⑧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⑨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보호자 및 서울특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자료 및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서울특별시내 학생인권 실태 및 이 조례의 이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서울특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6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행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시정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감, 지역교육청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2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제2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유아,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 유치원의 교직원 및 보호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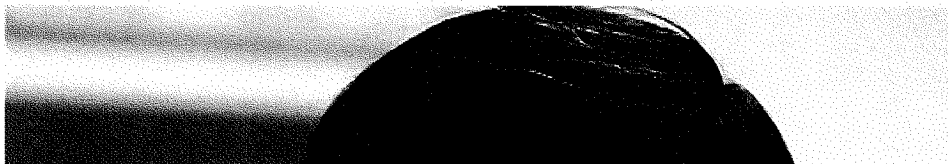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새해 서울교육 `무상교육·학생자율'에 방점

 연립뉴스 | 기사입력 2010-12-30 16:36 | 최종수정 2010-12-30 16:45





자료사진 <신년인터뷰>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를 하고 있다. 광 교육감은 "새해부터 초중등 3~4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모든 학생에게 전면적으로 시행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2010.12.27 swimer@yna.co.kr

저소득층 교육복지 수혜율 52%→100%로

학생인권조례 논란 속 수업규율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30일 내놓은 2011학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자율성 신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100% 지원, 기초학력미달학생 전담교사 배치, 맞벌이 부부 자녀 돌봄교실 등 누구나 공감할 정책이 적잖다.

그러나 올해 검토단계부터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온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정책입안 참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축소·폐지 등은 내년 시행단계에서도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해 `서울교육'을 정책 방향별로 정리했다.

◇무상급식과 준비물 지원 = 예산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최소 초등학교 3개 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여기다 20개 안팎의 자치구 예산을 더하면 4개 학년도 가능하다.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자녀는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마찬가지다.

공립 초등생은 학습준비물 비용을 2만원씩 받게 되며 중학생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시예산이 더해지면 초등생 지원을 3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아침 돌봄교실이 오전 7시30분~8시30분 운영되고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방과후학교 시간도 오후 9시까지 늘어난다.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교육복지 수혜비율은 올해 52%에서 내년에는 100%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학력격차 해소 =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전담하는 교사가 학교별로 1명씩 배치된다.

전문가, 지역청 담당자, 교사 등이 연계하는 학습의욕·자아정체성 향상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겨울·여름방학 집중캠프도 도입된다.

영재교육기관 정원의 10%는 소외계층 자녀로 채워진다. 또 영재교육 영역은 수학, 과학, 정보, 예술, 문예창작, 인문사회 등 다방면으로 확대된다.

◇인권조례와 학생 정책참여 =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내 집회자유 보장 등 한층 높은 수위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치되며 학생회 대표로 구성된 학생참여위원회가 구성된다.

`서울교육 학생창안대회' 대표와 교육감, 지역교육장이 서울 교육정책을 놓고 논의

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시교육청은 학생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선별 수용할 계획이다.

◇수업 규율은 강화 =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는 학생 자율성을 신장시키지만 수업 규율은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교권 확립차원에서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가 위촉돼 법률자문을 한다.

교사의 학생 처벌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출석일 중 3분의 1 이상 출석정지를 받는 문제학생을 유급시키는 안, 학부모를 강제 소환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줄 것을 교육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학생의 학습 부담은 줄여준다. 고 1~2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되고 중 1~2 대상 학력평가는 폐지된다.

초중고 사설모의고사가 전면 금지되며 선행학습 유발 프로그램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대신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는 문예체 교육이 중시된다. 초6, 중3, 고3 등 전환기 학생의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집중편성한 '6·3·3 징검다리 프로그램'이 나온다.

명사 초청강연, 미술관·박물관 연계,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해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jslee@yna.co.kr

[관련기사]

- ▶ "3분의 1 이상 출석정지 받으면 유급"(종합)
- ▶ <말 많던 무상급식 드디어 시행되나>
- ▶ 서울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통과
- ▶ 광노현, 새해초 두발·복장 자율화 시사(종합)
- ▶ 서울교육청 대대적 조직개편...학교혁신과 신설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4844822>

[인쇄하기](#) [취소](#)

#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학교생활교육혁신방안 시안도 함께 제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9월 8일(목)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학교생활교육혁신 시안을 발표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교생활교육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작성한 자문위의 한상희 위원장(건국대 교수)은 초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서울의 학교현실에서 최적의 형태로 실천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제시 등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종래의 '권리자-침해자 모델'을 탈피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하는 '공동협력자 모델'을 주된 구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 총 6장 58개조(부칙 제외)로 구성된 초안은 제1조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학교장·교직원·학부모 등의 조례 준수 의무(제4조)에 대한 명기와 함께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지는 학생의 책무성도 함께 명시(제5조)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으로 이번 초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체벌 금지' 조항과 함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제8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과 교사간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서울학생인권조례안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 학생회의 역할과 권리를 별도 조문으로 명시(제20조~제22조)하고,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정책에 학생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학생의회를 구성(제35조~36조)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을 강조한 점도 특징적이다. 또한 '복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제14조)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제15조)를 보장하되,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자치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 그밖에 '학습에 관한 권리'(제10조),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을 선택할 권리'(제11조), '양심 종교의 자유'(제18조), '복지에 관한 권리'(제23조~26조)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학생의 인권을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규정으로 제한'(제3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장소·방법을 제한'(제19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간의 우

려와 달리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안정화에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한 정책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는 학생인권위원회(제31조~제33조)와 학생인권옹호관(제38조~제40조)을 두어 학생인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향상을 도모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학생인권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친화적 교육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제51조~제57조) 명시되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지원센터'를 두어 학생인권 지원업무를 맡도록 하는 조항과(제41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도 명문화되었다(제46조~제50조).

□ 이번 초안은 2010년 11월 '학생인권조례 및 생활지도혁신자문위원회'(2011년 5월, 조례에 의한 법적기구로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로 재발족) 발족을 시작으로, 11차례의 지역순회 공청회, 연구 용역, 온라인 설문조사, 교직원단체 의견수렴 등 1년 가까이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복수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상희 위원장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문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9월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9월중으로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하여, 2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11월 서울특별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는 각 학교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함께 발표된 학교생활교육혁신방안(시안) 마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문위 박영미 부위원장은 "현재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안은 작년 11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병행 조치로서 자문위 생활지도혁신분과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4차례의 생활교육혁신 연속토론회(4월~7월), 교원 단체 의견수렴, 생활지도 근본대안 마련을 위한 각 학교 의견수렴(총 733개교 회신) 등을 종합하여 최종 시안이 마련되었다.

□ 학교생활교육혁신 시안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제8조)을 하도록 한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안은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와 교권보호 지원, 학교의 생활교육 역량강화 지원, 학교 자치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문위가 제안한 학교생활교육혁신 시안은 앞으로 교직원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더 가다듬은 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영미 부위원장은 "시안이 현재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 앞으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학교 현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였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



교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였다.

첨부파일: 학생인권조례\_초안\_승지.hwp

첨부파일: 학생인권조례\_초안\_전문.hwp

첨부파일: 학교생활교육\_혁신\_방안\_서안.hwp

첨부파일: 학생인권조례\_제정\_공청회\_추진\_계획(안).hwp

2011-09-07 (서울특별시교육청 / 책임교육과 / 신선희(3999-551) / @

#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 2조 제 2호 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의 학원을 말한다.(제1안)

4. “학생”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u>학교에 재학중인 사람</u> 을 말한다.(제1안)
4. “학생”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u>학교에 학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u> 을 말한다.(제2안) - 퇴학생, 자퇴생 등 학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포함 - 이 경우 성인(19세이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생으로 포함됨
4. “학생”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u>학교에 학적을 가진 사람</u> 을 말한다. 다만 학적을 갖지 아니하더라도 <u>18세 미만의 자는 학생으로 본다.</u> (제3안) - 학교 밖에 있는 사람도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학생으로 보아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함 - 이 경우 교육청의 업무관할범위를 넘어선 사람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하게 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5.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

을제 6 호 정 2

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6.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③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그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유치원장 포함. 이하 같다.),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의 책무)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제1안)
②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학교가 정한 생활교육방침과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교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제2안)

제6조의(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이 조례가 정하는 내용은 서울특별시의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 제2장 학생의 인권

###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경제적 지위,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 교육시설의 확보나 교육의 실시 등 모든 학교생활에 있어 장애나 신체조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은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의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안)

③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2안)

제9조(안전관리체제의 정비 등) ①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10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정규교과 이외의 학습을 선택할 권리)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참석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13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4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에 의한 규제는 예외로 한다.(제1안)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7조의 학교학생회에 의한 자치규제는 예외로 한다.(제2안)

제15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그를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자

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제1안)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안)

-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등 자기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때에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하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제18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이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종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과목(이하 이 조에서 「대체과목」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을 부과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대체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
5.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등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⑤ 교육감은 입학이나 전학과 관련한 학교의 배정에 있어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를 기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종교와 관련한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교육상 목적



<p>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안)</p> <p>④ 학생은 정규의 교과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열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안)</p> <p>-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음</p>
---

##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20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제37조에서 정한 학생회 및 기타 학생 자치조직(이하 「학생자치조직」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하며 자유롭게 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 학생자치조직의 설립목적 및 활동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4. 다른 학교의 학생자치조직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21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3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자기정체성과 역량의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의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

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7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관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8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이 침해

당했을 때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교육지원청, 기타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절 특별한 보호와 배려

제30조(특별한 보호와 배려)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근로 학생 등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서 열거한 학생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의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학생이 가정형편 등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 제1절 학생인권위원회

#### 제31조(학생인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위원회(이하 “학생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교육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활동에 대한 교육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교육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교육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교육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심의
9. 교육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학생인권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2조(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인 이상
2. 학생의회에서 학생인권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인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인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
  7.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이상
- ②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 ②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 회 이상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학생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학생인권위원회의 간사는 제31조제2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인이 담당한다.
- ⑥ 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⑦ 학생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4조(규칙의 제정)

-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학생인권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2절 학생자치기구

##### 제35조(학생자치의회)

- ① 교육감은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참여와 의견을 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 자치의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학생자치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학생의회는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한 의견의 제시
  3.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교육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생인권옹호관의 인권구제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8. 기타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학생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의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의회의 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36조(학생의회의 구성과 운영)

- ① 학생의회의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소속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의 학생회에서 각 1명씩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② 학생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회 의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된 의장단을 둘 수 있다.
- ③ 학생의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3인 이상 약간명(이때 부의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의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학생의회가 선출한다.
- ④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1 회
  2. 임시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00명 이상의 재적의원의 찬성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 ⑤ 학생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학생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37조(학교 학생회)

- ① 학생 자치 및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각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에 학생대표기구로 학생회를 둔다.

-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학교인권 개선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2. 학생인권에 영향을 주는 학교규칙에 대한 의견 제시
  3. 학교의 생활교육 방안 및 학생규율 제정에 대한 참여
  4. 학교규칙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학생규율 위반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조치
  5. 학생의회 의원의 선출
  6.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속하는 제반 사항
- ③ 학생회는 제20조제2항의 권리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한
  2. 학생총회·대의원대회 등을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한
- |  |
|--|
| 3. 학생회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제1안)                                    |
| 3. 학생회 예산, 결산 및 제14조 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제2안)<br>- 제14조제2항의 결정에 따라 달리 함 |
4.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한
- ④ 학교의 장은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교사의 지정, 예산과 공간의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학생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정한 자치규정으로 정한다.

###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정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그 보수 및 처우는 <별표>와 같이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혹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및 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의회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0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써 정한다.

#### 제4절 학생인권지원센터

제41조(학생인권지원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학생인권센터에 계약직공무원을 두며 그 정원 및 그 처우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 제42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 제4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학생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공청회 등) 교육감은 교육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절 학생인권영향평가

### 제45조(학생인권영향평가)

-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교육감의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권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장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생인권 상담실을 둔다.
- ③ 제2항의 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밖에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 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 제47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5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인권의 침해를 받았

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의 동의(이하 「피해당사자」라 함)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직권으로 혹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조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이 장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질의를 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제48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5조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그 소속 학교의 장 등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항의 권고, 제5항에서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 이 설명한 내용, 사건 처리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49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장에 의한 사건 처리 결과를 교육감과 학생 인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이 장의 구제신청 및 조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학생인권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지득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 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제5장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51조(학생인권교육과 홍보)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 원은 모든 사람이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 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 및 그 홍보에 관 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 다.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생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 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 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5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보호자 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제57조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이 장에서 정한 인권교육과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보장과 인권친화적 교육문화의 형성을 위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장 보 칙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개정 심의위원회) ①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별표> 학생인권옹호관등의 정원, 급여 및 처우기준

구분	정원	급여 및 처우기준
학생인권옹호관	(1인)	(○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준함
학생인권센터 팀장	(○인)	(○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준함
학생인권센터 팀원	(○○인)	(○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준함

# 공 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및 추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4조 제3항 에 따라 제1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12. 5. 3.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및 추천

### 1. 분야 및 인원

분야		모집인원	임기	근거	비고
시민 (공개 모집)		2명 이상	2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4조제3항제3호	시민
외부전문가	공개 모집	5명 이내	2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4조제3항제1호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문화, 인권전문가
	비영리단체추천				
학부모 단체 추천		2명 이상	2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4조제3항제6호	학부모 단체 추천

※ 신청서(추천서)는 서면 또는 우편 접수

※ 단체 추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여야 함



## 2. 선발방법 및 일정

- 가. 심사(공개모집) 및 심의(추천)를 통해 선발
- 나. 일정

구 분	일 정
신청 기간	2012. 5. 3(목) ~ 5. 11(금)
심사 및 심의	2012. 5. 14(월)
위원 선정 통보	2012. 5. 16(수)
위촉장 수여(예정)	2012. 5. 18(화)

- 다. 선발된 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

## 3. 신청(추천대상자) 자격

### 공통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나. 인권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이 있는 사람
- 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사람

### 전문가

- 가. 응시연령 및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시민

-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사람

#### 4. 학생인권위원회 업무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 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 5. 제출 서류

가. 공개모집 위원 (시민, 외부전문가)

- 신청서 1부 : 붙임 【서식1】
-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 1부 : 【서식3】
- 이력서

나. 비영리단체, 학부모단체 추천

- 추천서 1부(단체용) : 붙임 【서식2】
-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 1부(추천대상자 작성) : 【서식3】
- 이력서(추천대상자 작성)

다. 선발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라. 신청서 배부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마. 신청서(추천서) 접수처

우편번호) 110-78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송월길 28)

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학생인권위원회 담당자)

\*유의 사항 : 신청서(추천서)는 서면 또는 우편 접수.

## 6. 기타 사항

가. 시민 공개모집 위원은 타 시도로 진출할 경우 자동으로 위원자격이 상실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담당자 : 김영삼, 3999-551)로 문의

【서식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접수번호		지원영역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법률 <input type="checkbox"/> 인권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시민	사진 반명함판 (3.5*4.5cm)
지원영역	<input type="checkbox"/> 전문가 <input type="checkbox"/> 시민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공분야		
현주소		현주소		* 시민분야 지원 해당자 기게
연락처				
소속기관		이메일주소		
활동 경력 및 실적				
활동기간	활동 내용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발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신청자격 및 경력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동의합니다.

2012. . . .

응모자 :

※ 별첨 :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이력서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서**

추천기관 :

순	소속 기관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성별	추천사유	전공	활동경력
예시	☆☆연 구소	교육팀	팀장	ööö	여	인권교육 전문가	사회 복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1								
2								
3								

저희 000 단체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에 상기인을 추천합니다.

\* 상기 기재사항과 별첨한 추천자 인적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발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별첨 : 추천대상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미영리단체 확인증  
단체 소개서(별도의 양식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자 기 소 개 서  
(활동계획서)

성 명 : 000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12년 월 일

작 성 자 : 0 0 0